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전남지역본부	061-280-8042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u>영광군</u> , <u>함평군</u>
전남동부지부	061-724-1044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지부	051-712-9675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울산시, <u>양산시</u> , <u>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u>
경남지역본부	055-212-1373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함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055-310-6625	김해시, 밀양시, <u>양산시</u>
경남서부지부	055-756-3063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제주시, 서귀포시

\* 밑줄 친 지역은 공동 관할구역임

[별표 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자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6678-4112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7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02-769-6820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용산구, 이포구
인천지역본부	032-450-0532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032-450-0575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u>김포시</u>
경기지역본부	031-259-7905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031-628-6896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u>가평군</u> ,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031-496-1479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경기북부지부	031-920-6714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u>김포시</u>
강원지역본부	033-259-7612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원주시, 영월군, <u>정선군</u> , <u>평창군</u> , <u>횡성군</u> , <u>가평군</u>
강원영동지부	033-655-8873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u>평창군</u> , <u>정선군</u>
대전지역본부	042-866-0142	대전시, <u>공주시</u> ,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u>서천군</u> , 청양군, <u>세종시</u> , <u>영동군</u> , <u>옥천군</u> , <u>당진군</u> , <u>예산군</u>
충남지역본부	041-621-3683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u>당진군</u> , <u>예산군</u> , 태안군, 홍성군, <u>공주시</u> , <u>세종시</u>
충북지역본부	043-230-6814	청주시, 보은군, <u>영동군</u> , <u>옥천군</u> ,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u>음성군</u>
충북북부지부	043-841-3612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u>음성군</u>
전북지역본부	063-210-9923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원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063-460-9831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u>서천군</u>
대구지역본부	053-601-5297	대구시, <u>고령군</u>
경북지역본부	054-476-9329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u>고령군</u>
경북동부지부	054-223-2042	포항시, <u>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u> ,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053-212-3332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지역본부	062-600-3031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u>영광군</u> , 장성군, <u>함평군</u> , 화순군

\* 밑줄 친 지역은 공동 관할구역임

[별표 6]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진단관리번호 :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수신자 : (기업명) 대표이사, ○○○진단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에서 귀 사의 맞춤형(자체) 치유과제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유효(개선)기한 내에 활용(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맞춤형 치유과제

치유분야	치유사업	지원기관	유효기한

\* 추천서 발금 이후 진단기업의 결격사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원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책자금 및 보증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자체 치유과제

치유분야	개선권고 내용	개선기한

- 붙임 1.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1부,  
 2.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1부, 끝.

20    년    월    일

○○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장  
**○○ 지방 중소기업 청 장 (직인)**

주 소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담당부서	기업건강관리팀	담당자	

##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처 방 1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 유 사 유									
치 유 내 용									
처 방 2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 유 사 유									
치 유 내 용									

##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 ① 진단기업 현황

기업명	설립일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목			
* 최근 3년간 기업경영성과 요약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 ② 건강진단 결과(S/W/O/T-S/R)

기술 및 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기회 [O]		강점 [S]		건전 [S]	
위험 [T]		약점 [W]		위험 [R]	

### ④ 기업성장 로드맵 및 개선방향

[별표 5]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접수번호 : \_\_\_\_\_

진단관리번호 : \_\_\_\_\_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수신자 : ○○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장

진단기업에 대한 맞춤형 치유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업명		대표자(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
소재지			
치유분야	치유과제(치유사업)	지원기관	유효기한
자 금			
보 증			
R&D/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M&A			
개선권고			

- 붙임 1.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1부,  
 2.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1부, 끝.

20    년    월    일

○○ 진단기관장 (직인)

주 소			
문서번호	-	팩스번호	
담당자(연락처)		진단자(연락처)	

[별표 4] 2014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2014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연계형 <input type="checkbox"/> 수요자선택형 <input type="checkbox"/> 해외전문가 <input type="checkbox"/> 융합						구분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신청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본 지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분야	대분류/중분류										
컨설팅 주제											
컨설팅 기간	20 . . . ~ 20 . . . ( 개월)										
컨설팅 금액											
산출 금액	천 원		할인 금액		천 원		최종 금액		천 원		
정부지원금	천 원 ( %)		기업부담금		천 원 ( %)						
투입명수	총 명		투입일수		총 일 (M/D)						
신청기업	기업명						설립(예정)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는 가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평가장소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공장				전화번호				
	주소		본사 우( - )				전화번호				
			공장 우( - )				전화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중분류)				업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원)	영업이익 (원)	당기 순이익 (원)	자산총계 (원)	부채총계 (원)	자본총계 (원)	유동비율 (%)	
										20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사근로자수)		
	우대가점 (최대5점)	2점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input type="checkbox"/> 수출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IMS인증								
5점		<input type="checkbox"/> 싱글PPM <input type="checkbox"/> 농공상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PMS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input type="checkbox"/> 500마일리지 <input type="checkbox"/> 1,000마일리지 <input type="checkbox"/> 1,500마일리지 <input type="checkbox"/> 2,000마일리지 <input type="checkbox"/> 2,500마일리지									
총괄책임자 (신청기업)	성명						휴대전화				
	직위						e-mail				
	전화						팩스				
컨설팅기관	기업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근: 명 비상근: 명			
과제책임자 (컨설팅기관)	성명						휴대전화				
	직위						e-mail				
	전화						팩스				
컨설턴트	성명	상근여부	등급	M/D	성명	등급	M/D	성명	등급	M/D	
<p>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신청취소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기업 대표자(또는 총괄책임자)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중소기업청장 귀하</p>											

**[별표 3]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USD	JPY	EUR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li> </ul>	1,000 이하	90,000 이하	740 이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720 이하	65,000 이하	530 이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550 이하	50,000 이하	410 이하

\* 해당분야라 함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기술분야를 말함

\*\* 기술사 자격증은 일본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별표 2]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등급	학력 및 경력기준	자격 및 경험기준	계(원)
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1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7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자격증 보유안자로서 15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li>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21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li> </ul>	985,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자격증 보유안자로서 10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li>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1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li> </ul>	834,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자격증 보유안자로서 3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자</li>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9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li> </ul>	757,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를 가진 자</li>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li>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로서 6년 이상 컨설팅 수행한 자</li> </ul>	644,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를 가진 자</li>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li> </ul>	518,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가진 자</li> <li>·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li> </ul>	-	388,000

\* 해당분야라 함은 사업 Track별 지원내용에 대한 컨설팅 분야를 말함

\*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동일 기준 대비 1단계 상향(최대 2등급 이하)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  
(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4110 34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제1차 금속산업 (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감관(전기용접 보통감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감재(아연도금감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양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해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치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치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별표 1-2] 부품·소재산업 및 뿌리산업의 범위

## 부품·소재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 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mu$ 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별표 1-1] 원스톱 창업지원 대상 업종**

○ 창업절차대행(창업법인설립, 법인전환) 이외의 세부과제는 제조업에 한함.

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	세부과제별 해당 업종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설립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작성)
A (1~3)	농업 임업 및 어업	●	
B (5~8)	광업	●	
C (10~33)	제조업	●	●
D (35, 3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E (37~3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F (41, 42)	건설업	●	
G (45~47)	도매 및 소매업(지원제외) (단,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지원)	○	
H (49~52)	운수업	●	
I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X	
J (58~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64 금융업은 지원제외)	○	
L (68,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X	
M (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1, 712, 7152, 7153 지원제외)	○	
N (74~7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X	
P (85)	교육 서비스업 (851~854 지원제외)	○	
Q (86,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 86 보건업은 지원제외)	○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지원제외)	○	
S (94~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X	
T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X	
U (99)	국제 및 외국기관	X	

\* ● : 모두 지원 / ○ : 일부지원 / X : 지원제외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당업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 5

## 기타 사항 [신청방법, 지원제외 대상 및 가점]

###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의 1개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서류(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글 양식 필히 준수(PPT의 경우도 동일)

### 나. 지원제외 대상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원스톱 창업지원(중전 창업대행 포함)”을 기지원 받은 동일 창업자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종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다. 우대 가점 : 최대 5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컨설팅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 과제(과제책임자 또는 과제 참여율 30%이상인 경우),
- (가점 5점) 장애인 기업 ■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기업(500마일리지당 1점)

### 라.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장소
'14. 10. 13(월), 14: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3층 중회의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2층 강당)

\* 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

### 가.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상근컨설턴트 **7명 이상**을 보유하고,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하는 기관
  -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 인력은 불인정
- 컨설팅대학원 · 창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중기청 지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 단,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수요자 선택형' 中, '퀵스톱 창업지원'만 수행 가능하나, 위의 등록기준(상근 7명, 5명 이상은 4등급 이상) 충족 시 타 분야의 컨설팅도 수행 가능

### 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2)**에 따라 등록
  - \* 중기청 지정 컨설팅 대학원의 졸업자(학위취득시)의 경우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수습 기간은 경력(최대 1년)으로 인정
  - \* 단, "수요자 선택형" 中 "퀵스톱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활용

### 다. 해외전문가 등록기준

- 해당 국가 과학자 협회 또는 은퇴 기술자 협회에 등록된 자  
(예 : 독일SES, 프랑스ECTI, 일본 키타큐슈 협회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록 해외전문가로서 2회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기타 해외전문가 등록기준은 **해외전문가 등급 및 자격기준(별표 3)**에 따라 등록

### 라. 신청 및 등록방법 : 온라인(www.smbacon.go.kr) 신청

-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운영기관에 신청

### 마. 신청 · 등록 기간 : '14. 10. 7(화) ~ 15(수)

- \* 동 신청 ·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 등록 가능

### 바. 문의처 및 연락처

구 분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553-3808 (팩스) 02-553-3813
특화형	해외전문가, 융합 컨설팅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2-6205-8121,8123 (팩스) 02-568-0894
	창업기업 컨설팅		

### 3

## 분기별 신청·접수 과제 (‘14. 2월, 5월, 8월, 10월)

가. 4분기 신청·접수기간 : ‘14. 10. 7(화) ~ 21(화) 18시 까지

### 나.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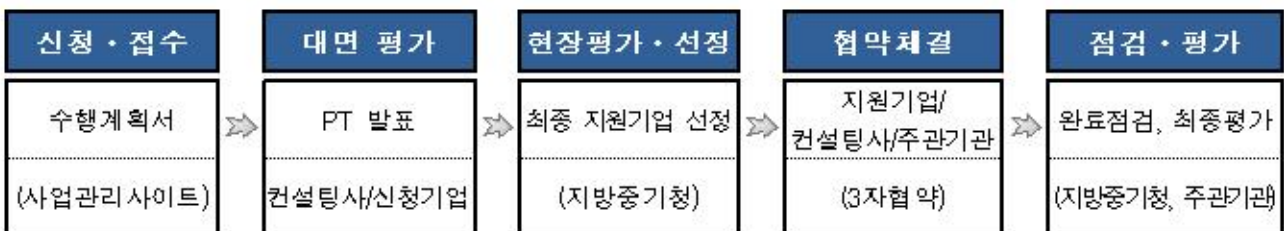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 원 대 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
창업기업 컨설팅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창업기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정부 65%, 기업 35%	

□ 추진 절차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전화) 042-388-0326 (팩스) 02-6234-3107	주관기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전화) 02-6205-8121, 8123 (팩스) 02-568-0894	운영기관
클센터		1661-1357 (내선번호 22)	

\* ‘수요자 선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http://www.tipa.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나. 특화형(해외전문가 컨설팅, 융합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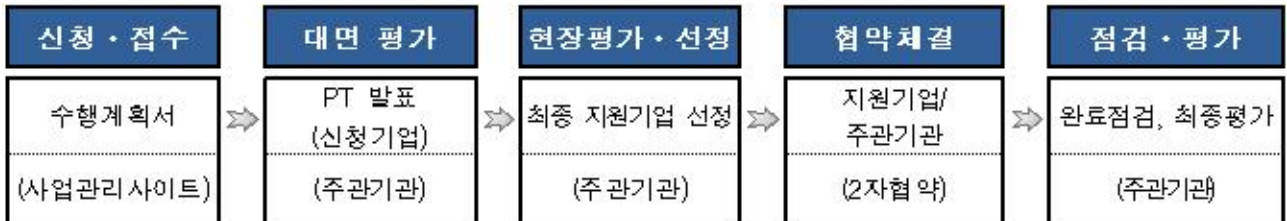
□ 지원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해외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력 제한 없음</li> <li>제조업 기술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핵심 기술 분야 (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개발, 신공법도입, 원가·품질개선 등)</li> <li>자문료,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li> </ul>
융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력 제한 없음</li> <li>부품·소재, 뿌리산업 영위기업(별표1-2 ~ 2년내 정부R&amp;D과제 성공판정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기술간 융합 분야 (新사업 및 상품기획,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li> </ul>

### □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해외전문가 컨설팅 융합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가능, 1회)

### □ 추진 절차



###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별표 기 참조]	주관기관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553-3808 (팩스) 02-553-3813	운영기관
클센터		1661-1357	

\* “특화형(해외전문가 컨설팅, 융합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http://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다. 수요자 선택형(원스톱 창업지원)

※ '14년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신청을 받지 않음

## 2

## 연중 수시 신청·접수 과제 [예산 소진시 까지]

### 가.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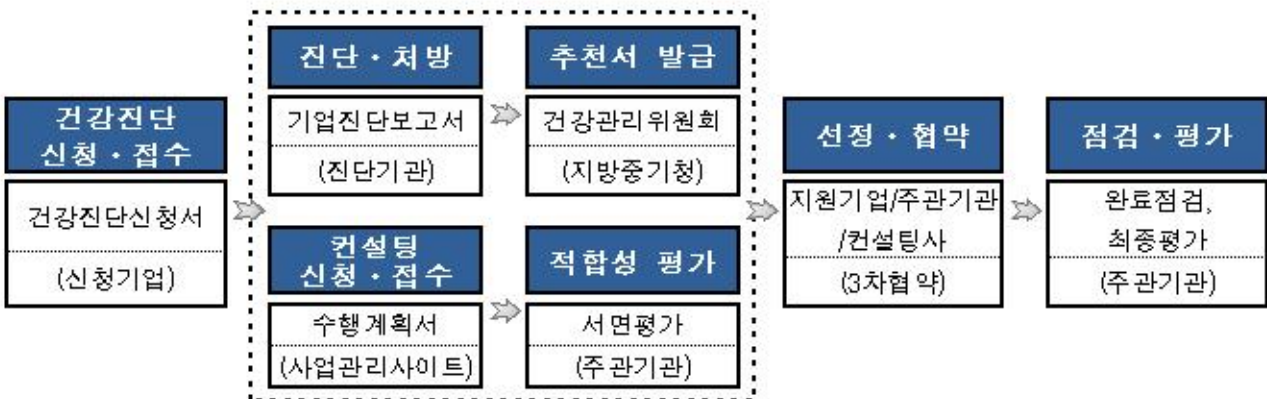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업종 제한 없음</li> <li>•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을 처방받은 기업[별표5]</li> <li>• 추천서[별표6]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li> </ul>	<p>경영·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amp;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 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환경경영 등)</p>

□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공정혁신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 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가능, 1회)

□ 추진 절차



\* '건강진단, 컨설팅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적합성 평가' 절차는 동시 진행 가능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042-481-4523, 8909 (팩스) 042-472-3428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지)부	[별표 7] 참조	주관기관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전화) (02) 553-3808 (팩스) 02-553-3813	운영기관
클센터		1661-1357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http://www.sbc.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나. 사업 규모 : 총 132억원

- 건강진단 연계형(공정혁신) : 54억원
- 수요자 선택형 : 72억원(지속성장 46, 창업기업 14, 원스톱 창업 12억원)
- 특화형 : 6억원(해외전문가 3, 융합 3억원)

## 다. 지원 조건

TRACK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 추가연장 可, 1회)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정부 65%,기업 35%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융합 컨설팅			

## 라. 정부지원금 산출방식(건강진단 연계형, 수요자 선택형(지속성장), 특화형)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30~50%	15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50%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22백만원	15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27백만원	22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5%)
7천만원 초과		30백만원	27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단, 수요자 선택형 內, '창업기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은 정액, 정률 지원

## 마. 선정 · 평가

TRACK		선정 절차	평가방식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 신청·접수 → [추천서 발급 & <b>적합성 평가</b> ] → 선정·협약 * "건강진단컨설팅" 신청 및 "추천서 적합성평가" 동시 진행 가능	서면평가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 신청·접수 → <b>대면평가</b> → <b>현장평가</b> → 선정·협약	발표평가 (PT)
	창업기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	▪ 신청·접수 → <b>선정평가</b> → 선정·협약	온라인평가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 신청·접수 → <b>대면평가</b> → <b>현장평가</b> → 선정·협약	발표평가 (PT)
	융합 컨설팅		

# 2014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4분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의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4분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 1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2014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추진체계 >

TRACK	구분	지원대상	비 고
1. 건강진단 연계형 (진단·처방+치유연계)	공정혁신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연중 수시·신청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 없음	공모방식
2. 수요자 선택형	창업기업 컨설팅	일반 창업기업(업력 5년 이내)	공모방식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창업기업(업력 5년 이내)	연중 수시·신청
3.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제조업 기술분야	연중 수시·신청
	융합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부품·소재·뿌리산업	연중 수시·신청

- \* (원스톱 창업지원) 창업 준비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필요한 컨설팅을 연계하여 (예비)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경영 조기안정화를 지원
- \* (해외전문가 컨설팅) 선진국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첨단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융합 컨설팅)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 컨설팅 지원